

# 후계농업 인력육성 백문백답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무담당자 가이드

후계농업인력육성 백문백답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무담당자 가이드



# 후계농업 인력육성 백문백답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무담당자 가이드



03 **Part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행가이드

- I.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소개
-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29 **Part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백문백답

- I. 신청자격과 대상자 평가
- II. 자금 지원
- III. 사후 관리
- IV. 기타 사항



57 **Part3**  
201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절차안내

- I.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소개
- 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 III.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표



72 **부록** \_ 농업교육 정보사이트 소개

Part1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실행 가이드

▶ 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중구 사무관 김희중 주무관 홍길수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홍정현	02-2080-6785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 I.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소개

### 1.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됩니다.

-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 안정적인 농업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제공
-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한 면밀한 사후 관리

### 2.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5%	93%	94%	94%	12월말	(선정한 후계농업인수-영농미종사자수)/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2,696,630	88,000	88,000	88,000	88,000
용 자	2,696,630	88,000	88,000	88,000	88,000
● 후계농업경영인 (용자)	2,696,630	88,000	88,000	88,000	88,000

### 4. 근거법령

본 사업의 근거법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 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입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근거법령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아래에 명시된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 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그러나 아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있다 해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있기 이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기반 조성비용

지원대상	세부 지원 대상	
	경종 분야	축산 분야
농지(토지) 구입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하여야 함
시설설치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경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운영자금 (정보화)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 융자제의 대상사업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나,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육우 자금은 계속 지원함)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 3.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 창업기반 조성비용

- ◇ 재원: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30%, 금융자금 70%(이차보전사업)
-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이 가능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대출기간 및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연리 3%)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자금의 지원 방식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총 3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분할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의 자금 40% 이상을 대출하여야 하며(사업량 40% 이하 추진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후연도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 재원: 농업교육 및 농어업경영컨설팅 예산
- ◇ 지원내용: (교육)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케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컨설팅)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 융자방식

### ◆ 사전 융자

- 대상: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한 후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대출 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 증빙서류, ②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합니다.
-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입니다.
  -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합니다.

#### 4. 대출 취급기관

-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 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 5.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 취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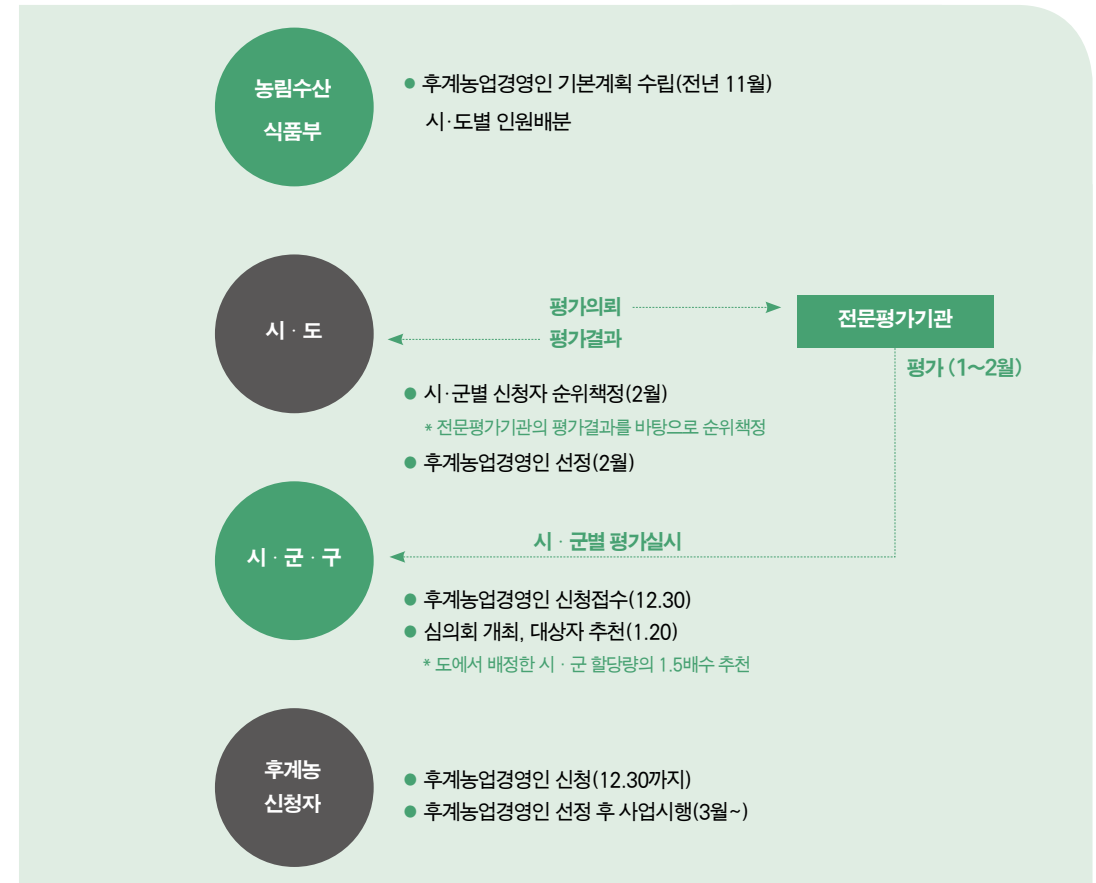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이 종료됩니다.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으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사업신청 당시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됩니다.

### III.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 1. 사업추진체계

- ◆ 사업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 ◆ 사업시행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2. 사업신청 단계

- ◆ **농림수산식품부:** 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후계농업경영인수, 사업비) 확정 통보
- ◆ **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 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관리,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 ◆ **시·군·구:**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 검토, 신용조사 의뢰 등(시·군은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해야 함. 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됨),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 제출
- ◆ **신청자:**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2년 12월 30일까지 주소지(영농정착 예정지 포함) 관할 읍·면 사무소(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단,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는 지역 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대출 신청자료 1부(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경영일지 1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서류 제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3. 사업자 선정단계

### 평가방법

- 시·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신청자에서 제외하고,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선정해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해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라 3~4월 중 1개월의 기간 동안 서면심사자료 확인(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와 함께 평가완료 보고서를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기타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
- \* 다만, 평가점수 후순위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시·군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별 할당량 변경가능

### 읍·면·동

- ◆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시·군

-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각 시·군의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 단체 관련자 등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시·군 담당과장,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함(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 시장·군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농업 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본다)
- ◇ 우선 추천 대상: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추천),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와 여성 농업인은 각각 추천인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시·도

- ◇ 시·군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 기관(농업인재개발원)에 평가 의뢰
-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 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하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귀농인 중 전(全) 세대의 농촌지역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관련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전문평가기관

-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는 서류심사와 부분 현장조사를 실시
-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 가능)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 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보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분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 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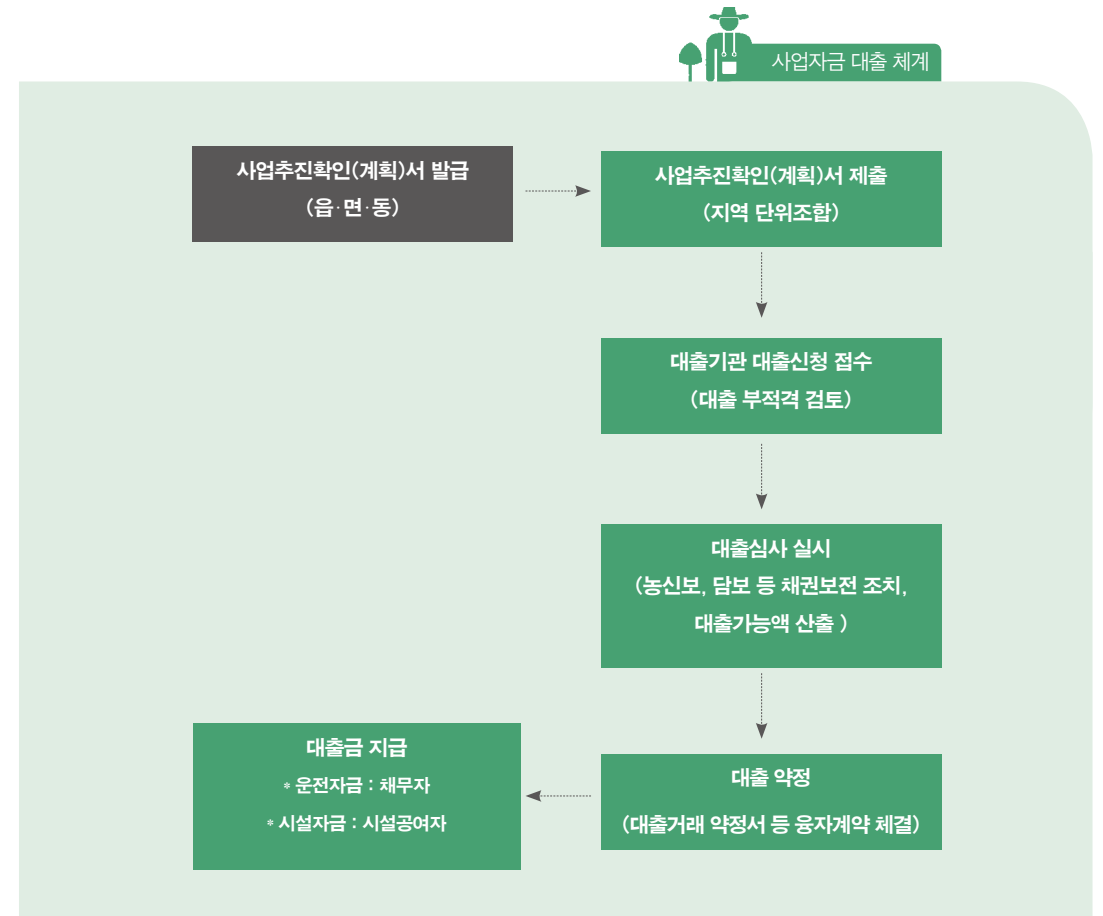
- ◆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출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 **사업대상자**: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사업추진 전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 사업추진 후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 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 실행이 2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재발급시에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

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5. 교육 및 컨설팅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사업자금 대출 전 사전 의무교육방식에서 대출시기와 무관한 선택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 **경영컨설팅:**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바우처(쿠폰) 또는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시까지 전년도 교육실적 및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연도별 차등 지원하며, 매년 초 개인별로 교육비 지급금액을 개별적으로 통보)
- ◇ **교육과정:**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자기 주도 학습 유도

\* 온·오프라인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은 별도 지정하여 안내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 기관에 융자금 회수를 통보
- ◇ 시장·군수는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

### 제재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8호 서식)
  -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②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③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는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④ 본인의 농업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제출
- ⑦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제출

-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 적용.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2년 경과시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취소 조치

#### 사업장소의 이전

-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 발급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구매비축 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 행정사항

- ◇ 시·도지사는 '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12.2.29까지 Agrix에 등록
-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반기 익월 20일까지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사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

#####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Agriedu.net의 「생산경영 정보 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겸직·겸업 여부, 농지 임의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시·도, 농협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8월 중)

##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 7. 성과측정단계

- ◇ **성과지표 측정:**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하며, 성과지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률을 말함
- ◇ **만족도 조사:**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조사는 하반기에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

##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12년도 사업평가:** '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 **환류:**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 9. 기타 사항

-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 추진요령에 의함

## 1. 사업신청 관련 사항

- ◇ **신청서 제출:** 영농정착 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며,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 **신청자격:** '12년 대상자와 동일      ◇ **신청기한:** 별도통보

## 2.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및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서류 제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3. 기타 사항

-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Part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백문백답



## I. 신청자격과 대상자 평가

### Q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신청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연령, 병역,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에 관해 몇 가지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행연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45세 미만 ▲병역 필이나 면제(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영농경력 만 10년 이내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이수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거나 등록예정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Q2. 남편이 이미 후계농인데 부인이 추가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2. 부인이 추가로 후계농 사업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부부의 주 사업품목이 각각 달라야 하며, 토지 등의 등기도 각각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즉 부부 각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품목이 다르고, 독립된 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Q3.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후계농 사업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시행 이전에 선정포기서를 제출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후계농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4. 후계농 신청자격 기준 중 '교육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4.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별도의 농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라면 다른 기관에서 농업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다른 기관에서의 농업교육 이수 실적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이수한 각종 농업관련 교육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으며, 각 시·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교육기관과 과정 등도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Q5. 귀농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후계농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5. 귀농자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후계농 신청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농 육성자금은 귀농귀촌 자금을 상환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후계농 육성사업과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Q6. 과거에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다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후계농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6. 이미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다 취소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후계농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7. 현재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데 후계농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7. 후계농 신청 당시 농업 외 타 산업의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후계농 선정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8.** 농식품부가 각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각 시·도가 최종적으로 후계농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후계농 신청자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가 심의회를 열어 사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시·도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9. 후계농 신청자격에 '교육실적'이 있는데 온라인교육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9.** 타 사업에서 교육실적을 판단할 때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온라인 교육은 50%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후계농 선정평가 시에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온라인 교육은 50%를 인정합니다.

**Q10. 거주지와 농지구매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10.**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철원지역의 농지를 구매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연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11. 가시오가피를 주작목으로 하여 후계농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1.** 가시오가피의 경우 농업이 아닌 임업에 해당하는 작목입니다. 따라서 농업분야가 아닌 임업분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업해당 품목 : 임업후계농 자격조건에 명시된 임산물 및 통계청 임산물생산조사에서 분류한 임산물

**Q12. 후계농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2.** 후계농 신청절차는 사업계획수립(1단계), 구비서류 준비(2단계), 신청서 접수(3단계)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전문컨설팅업체(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의 자문과 대출취급기관의 금융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자본조달 및 투자계획포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관련 서류(구비서류 목록은 14쪽 참조)를 갖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후계농 신청은 매년 12월 말까지이므로 연중 어느 때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신청한 후 처리 절차를 알고 싶다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3.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후계농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3.** 후계농 선정평가 해당년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선정평가표 상의 교육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4. 각 지자체의 후계농 할당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4.** 시·도별 후계농의 선정인원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도의 후계농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접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할당량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Q15. 시·군에서 추천할 수 있는 후계농은 몇 명까지인가요?**

**A15.** 시·군에서는 '후계농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선정해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6. 신규 농업인(영농경력 3년 미만)의 서면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A16.** 서면평가는 총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적절성, 개인 자질,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의 적절성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으로, 개인자질은 학교 및 교육, 전문성, 농산업인턴 경력, 재정상태로 각각 평가합니다. 또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은 영농비전, 농업승계, 추천서로 평가합니다. 단 '학력 및 교육'은 최종 학력과 최근 3년 이내 전체 교육이수 실적 중 평가점수가 높은 것을 평가점수로 반영합니다.

**Q17. 기존 농업인(영농경력 3년 이상)의 서면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A17.** 신규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서면평가는 총 80점으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의 적절성, 개인자질,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기본 평가기준은 신규 농업인과 동일하나 개인자질 측면에서 수상실적과 영농기록을, 지속성과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영농 규모와 정부정책 참여도를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Q18. 후계농과 관련해 추천서를 받을 때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A18.** 신규 농업인에 대한 추천은 학교장 또는 이장의 추천만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추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19.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와 제대군인이 후계농에 신청할 경우 혜택이 있나요?**

**A19.** 2011년까지는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와 제대군인에 대해 후계농 신청 시 혜택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Q20. 시·군·구 서면평가 후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0.** 해당 시·군·구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집계표와 후계농 신청자의 제출서류(서면평가표, 역량진단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복사본을 후계농 선정평가 일정에 준하여 시·도에 발송하게 됩니다.

**Q21.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1.** 일정기간(7년) 동안 창업기반 조성비용 및 교육비·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반 조성비는 농지, 시설, 운영비 등을 말하며, 역량 강화 지원비는 교육·컨설팅 지원을 말합니다.

**Q22. 우선추천 대상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A22.**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추천 대상이 됩니다. 추천 인원의 20% 이상은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를 우선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도 20% 범위 내에서 우선추천을 받습니다.

**Q23. 후계농 서면평가시 수상여부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A2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전국단위 기관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과 관련된 실적은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4. 서면평가표의 영농규모와 관련하여 미포함된 품목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24.** 품목에 대한 영농규모 평가시 미포함된 품목은 유사 품목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II. 자금 지원

**Q25. 후계농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A25.** 지자체의 선발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부적합 대상자는 후계농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라면 후계농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7쪽의 사업대상자 제외대상을 참조하세요.

**Q26. 후계농 서면평가지 영농기록 작성여부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A26.**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뿐 아니라 본인 수첩 등에 주기적으로 영농 기록을 작성한 것도 증빙자료 및 평가검증자료로 인정합니다.

**Q27. 후계농 서면평가지 자격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27.**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농림식품 관련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Q28. 후계농 서면평가지 세대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8.**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영규모,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검증을 실시합니다.

**Q29. 농업인(영농경력 3년 이상)과 신규농업인(3년 미만)의 판단 기준은?**

**A29.** 후계농이 서면평가지 제출한 농지원부의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평가표의 농업경력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Q1. 타인의 영농현장에 취직한 사람도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타인의 농장에서 고용원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을 갖고 자기영농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영농기반을 갖고 영농을 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 등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금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후계농 자금의 지원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축사 등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자금(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임대료 및 농업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생산기반과 크게 관련이 없는 시설(예: 버섯 종균배양 시설), 그리고 임업분야인 임산물(표고버섯,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생산,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Q3.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후계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3.** 후계농 육성자금은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의 명의로 된 사업만 추진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통해 토지구입, 시설건립 등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후계농이 공동경작을 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 등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건립하였다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운영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료비, 유류대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4. 운영자금(운전자금)은 농업 창업에 필요한 묘목, 종자구입, 가축 입식비, 정보화사업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창업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일반 영농비 성격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가족 간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후계농 자금지원 대상 중 '종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6.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하며, 영양체에는 묘목(옮겨심기 위해 가꾼 어린 나무), 종근 등이 있습니다.

**Q7. 농지 구입단가 기준이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대출가능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7. 사업실적 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검증하되, 농지구입자금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는 당해 농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한 후 감정가의 50~70% 정도를 담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8. 후계농에 대해 7년간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8.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7년이 경과되면 후계농 지원제도에서 일반 농어업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융자금 상환 마무리 전까지는 관리 필요). 즉 '7년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팅 등 후계농에 대한 특별 지원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9. 후계농 자금 지원시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요?**

A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규정상 후계농은 간이신용 조사에 의거하여 일반보증한도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약식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등을 통해 최대 10억 원(선도농 우대보증 1억 원 포함)까지 농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신보 사이트 확인 필요)

**Q10.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때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확인서가 무엇인가요?**

A10.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가 발급하는 사업추진확인서를 말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사업추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온라인 입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1. 사업추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1. 후계농으로 선정된 당해 연도가 기본적인 사업추진 기간입니다. 다만 1차 년도에 사업량의 40% 이상을 추진할 경우에 한해 총 3년간 2억 원 범위 내에서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기존 시설물을 매입한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2.**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에 대한 구입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우스 시설 등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지원 기준가격은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Q13.** 2012년 1월에 등기를 취득하고 나서 2월에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다면 이 때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3.** 이 경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4조 제3항 「신청자가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14.** 본인의 인건비도 후계농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A14.** 연간 사업비가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자필영수증을 받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항)

**Q15.** 후계농의 자격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5.**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향후 3년 동안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후계농 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농업 창업을 하였다면 후계농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Q16.** 여성농업인이 후계농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소유권 등기를 남편 명의로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A16.** 이 경우에는 사업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시행년도에 사업을 추진(착공과 완공)하였는지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사업시행년도 이전 사업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한 후 남편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부인 명의로 이전한다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Q17.**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A17.**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후계농이 직접 하우스 등을 건립하였다면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8.** 창업기반 조성비용과 관련하여 축사신축용 토지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8.**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축사신축용 토지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축사신축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19. 임대사업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9.** 후계농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후계자가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구입자금(임대료 등 운전자금은 지원불가)으로 제한됩니다.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임대기간인 3~5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계약갱신 또는 타 물건 임대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Q20. 후계농 육성사업의 사전용자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20.** 사전용자는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용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진행됩니다.

**Q21. 후계농 육성사업의 사후용자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21.** 사후용자는 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후용자 신청시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확인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시·군청에 제출하면 시·군청이 발급해 줍니다.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후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2.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조건이 있나요?**

**A22.** 여성이 후계농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계농 선정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추천할 수 있습니다.

**Q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무엇입니까?**

**A23.**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기금의 보증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정 대상자에 대하여 보증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법령상 농신보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지원 가능 여부
농업, 어업, 임업 등의 농림수산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보증가능
농림수산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물생산자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농림수산물 수출중소기업 등	보증가능

**Q24. 농신보의 경우 농신보 대출 이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24.** 원칙적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단, 정부정책 관련사업(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인 등)의 경우 농신보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Q25. 창업기반 조성비용으로 한우 또는 육우를 구입할 수 있나요?**

**A25.** 한우 또는 육우의 구입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원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 기존 낙농가 중 납유 권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육우자금을 지원합니다.

**Q26. 농기계구입자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26.** 농기계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자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후계농 사업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2009년부터 제외).

**Q27. 후계농 자금의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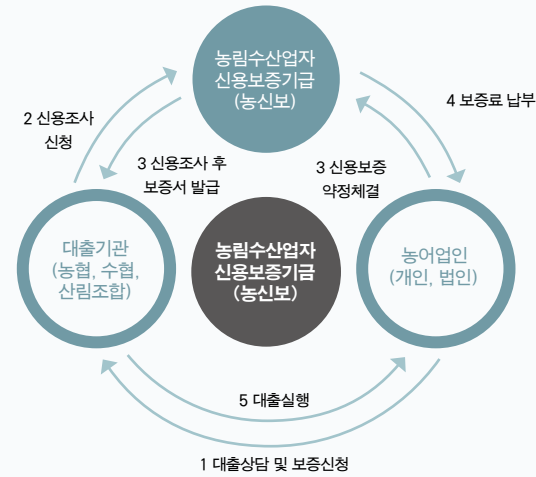
**A27.** 후계농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형태의 총자금 Pool제로 운용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합니다. 후계농은 총 3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분할신청할 수 있으며, 후계농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여야 합니다(사업량 40% 미만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8. 농신보 이용시 어떤 경우에 보증이용이 제한되나요?**

**A28.**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농신보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자, 농신보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29. 농신보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9.** 농신보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Q30. 농신보의 보증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30.**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에 대한 일반보증과 함께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은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가 있으며, 정부 정책관련 보증은 우대보증과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후계농의 경우 일반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우대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명	선도농 우대보증
주요내용	- 농업후계자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예시 : 후계농어업인, 전업농, 농업종합자금 등 - 일반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1억 원까지 간이 신용조사방법을 통하여 보증지원 결정
취급기관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소요예상	약 3일
준비서류	조합원확인서 등 보증대상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확인서류(농지원부, 어업면허장, 영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 정부정책보증별 대상자 확인서류



**Q31. 농신보의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1.**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일 경우 10억 원 이내(신보·기술신보 보증금액 포함), 법인일 경우 15억 원 이내(신보 기술신보 보증금액 포함)입니다. 또한 예외 보증한도로 농신보 심의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신보·기술신보 보증금액 포함)합니다.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농신보가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Q32. 후계농 지원자금으로 초지 조성이 가능한가요?**

**A32.** 가능합니다. 초지나 사료포를 조성하기 위한 논,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구입 자금을 대해서는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Q33. 창업기반 조성비용의 대출한도는 얼마입니까?**

**A33.**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최대 2억 원(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상기 대출한도 내에서 일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낙농분야의 경우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34.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34.** 금융기관 대출에는 신용대출(무입보신용대출, 보증인입보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부동산 담보대출, 보증인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가 필요 없으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35. 후계농으로 선정되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용자를 받을 수 없나요?**

**A35.**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농신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Q36. 창업기반 조성비용의 대출기간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36.**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Q37.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판매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인데 사업비로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37.** 홈페이지 구축의 경우 창업기반 조성비용 중 운전자금에 해당하므로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라면 홈페이지 개발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사후용자로 진행되나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대출도 가능합니다.

**Q38. 후계농 지원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8.** 사업대상자가 시·군에 사업추진계획확인서(사후용자일 경우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신청해 발급(2개월 유효)받은 후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출기관에서는 대출 부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심사를 실시(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등 산출해 적격자로 판단되면 사업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용자의 경우 운전자금을, 사후용자의 경우 시설자금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 Ⅲ. 사후 관리

**Q1.** 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회사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후계농이 공공기관, 회사 등에 취업하여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 등을 받는다면 후계농 지정이 취소되고 용자금도 회수됩니다. 다만, 영농에 지장이 없는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 격일·격주 2~3회 교대근무,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라면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장소에 대한 이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후계농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이에 관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Q3.**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 사유에 해당되는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Q4.**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계농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후계농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지원자금 상환완료일까지이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자가 후계농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시장·군수가 신청인의 영농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상환이 완료된 후계농이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후계농 자격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후계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5.** 특정 작목에 대해 자금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작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5.**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Q6.**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 등이 타인 명의로 이전되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6.** 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매매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의 소유권을 매매, 경매 등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사업계획변경 신청·승인 후 지원 자금을 재투자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사업이 취소되고, 잔여 용자금도 회수됩니다.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용자금 일시회수로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 상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7.** 대출금을 부당사용하였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나요?

**A7.** 이 경우는 정부지원자금 부당사용 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경중에 따라 1~5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 받습니다.

**Q8.** 후계농 자금으로 농업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슈퍼, 개인택시 등)를 경영해도 되나요?

**A8.**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융자금 잔여분도 회수조치됩니다.

**Q9.**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9.**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농업을 창업한 시점에 하면 됩니다. 부모 등과 공동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후계농 본인이 별도의 농업경영체가 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경영정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10.** 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10.**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시·군이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후계농이 제출한 사업추진 계획서의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 이전·유용되었는지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매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Q11.** 현재 산업기능요원인데 후계농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1.**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2.**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에 대학에 편입할 수 있나요?

**A12.** 대학 편입과 관련해서는 농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학 편입이 농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계농 자격을 유지하면서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계농의 대학진학(편입)이 영농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통학거리 및 주간출석일수 등을 고려(예를 들어 주중 2일 이상 출석일 경우는 불가능, 주말포함 2일 또는 야간대학의 경우에는 가능)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Q13.** 당해연도 기준인 경우 사업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사업계획서상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정상 사업기간이므로 사업비를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하나 지침에 한해 1회에 한하여 대출 기한을 연장(익년 6월 30일)할 수 있으며, 그 이후 2회 연장은(2개월, 8월 30일까지) 서류 보완과 관련이 있습니다.

**Q14.** 사업기간동안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A14.** 후계농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장 및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서식은 후계농 육성사업지침의 별지 3, 4호 양식 또는 Agriedu.net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Q15.** 후계농 육성사업의 창업기반조성비용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5.** 창업기반 조성비용은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나뉘며, 가공시설도 창업기반 조성비용에 포함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정보화 비용도 운전자금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16.** 구입 농지를 매도한 후계농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A16.** 후계농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하여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여 영농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업취소 및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후계농업 인력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 경우에는 시·군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대출금만 회수합니다.

**Q17.** 후계농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7.** 해당 시·군·구의 농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업무 분장에 따라 발급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농정부서에 문의한 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지원자금 상환완료일)이 경과한 후계농도 발급요청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는데 창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8.**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으면 후계농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후계농 사업 신청 자격이 정지됩니다.

**Q19.** 융자금의 대출 취급기관은 어디입니까?

**A19.**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에서 수행합니다. 농협과 다른 금융기관 모두 대출 업무는 본점에서 총괄하나 실제 대출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지점(농협 중앙회의 경우 경종은 농협, 축산은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등에서도 수행합니다.

**Q20.** 후계농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20.**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후계농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 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 농축산물 구매비축 시 후계농의 농축산물 우선 구매,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Q21.** 산업기능요원이 영농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 중단을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하면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합니다.

**Q22.** 후계농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22.** 후계농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하며, 온·오프라인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지정하여 안내합니다.

**Q23.** 사업취소로 인한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A23.** 이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서는 22쪽의 '제재' 관련 내용을 참조하세요.

**Q24.** 행정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3년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A24.** 지침상 '자진포기'는 3년간 제한을 받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포기가 되었다면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 지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착오에 의한 취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IV. 기타사항

**Q1. 후계농으로 선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A1. 후계농의 병역자격사항은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병역필 또는 면제된 후계농은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이 아닙니다.

**Q2.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이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절도, 폭행, 집시법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구속 등의 실형을 받은 경우 후계농 자격이 취소됩니다.

**Q3. 후계농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야만 후계농 자격이 주어지나요?**

A3.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자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Q4. 후계농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

**Q5. 영농종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후계농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A5.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후계농을 관리합니다.

**Q6. 후계농 선정기준 중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A6. 2012년부터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를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7. 후계농 육성사업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7. 농식품부의 역할은 후계농 육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수, 사업비)을 확정하며,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을 시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차원에서 후계농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으며(5년 단위), 연 1회 이상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Q8. 2012년 후계농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8. 2012년도 후계농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신청 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후계농과 우수농업인경영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9. 현재 영농에 종사하며,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이라면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Part3을 참조하세요.



Part3



# 201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절차 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희중 주무관 홍길수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홍정현	02-2080-6785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 I.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소개

#### 1. 사업의 목적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근거법령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입니다.(근거법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5쪽 참조)

#### 2. 성과목표 및 지표

매년 1,000명 수준의 추가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개보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추가지원대상자 선정자수	1,000	1,319	959	438	'13. 7월 말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 보고)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476,000	80,000	80,000	80,000	800,000
보 조	-	-			-
융 자	476,000	80,000	80,000	80,000	800,000

## II.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량 배정:** 시·도별 사업량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음

◇ **사업신청자:**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기한 별도통보)



#### 사업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1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 1부(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일지 1부(별지 제5호 서식),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서류 제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2. 사업자 추천단계

##### 시·군의 대상자 추천

◇ 64쪽 <별표1>의 평가표에 의거해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 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 실시 등을 통해 대출부적격자는 제외

- ◇ 전문가, 농협, 농신보,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시·군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시 결격사유 검토 및 추가지원 후보자 선정
- ◇ 후보자를 시·군 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선정된 우수농업경영인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 시·도

- ◇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군, 전문가, 농협,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 시·군 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 다만,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 추가 선정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 등에 통보
- ◇ **시장·군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 개최(필수사항임)

###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b>농림수산식품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li> </ul>
<b>시·도, 시·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li> <li>◇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발급</li> <li>◇ 관련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li> </ul>
<b>대출취급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 시행</li> <li>◇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li> <li>◇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li> </ul>
<b>사업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li> </ul>

\* 지원대상자인 우수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4. 사업계획의 변경

-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제재·용자금의 회수

- ◇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 선정취소 및 이와 관련한 용자금의 회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규정하는 바와 동일
- ◇ 사후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용자취급기관과 경영실태 조사·분석 실시(영농종사여부는 지속적으로 실시)
- ◇ 우수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Agriedu.net의 「생산경영정보 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 지원대상자의 교체

-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는 자는 당초 평가결과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행정사항

- ◇ 시·도지사: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Agrix에 보고하고(기한 별도통보),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지 제12호 서식)에 관한 사항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Agrix에 보고

- ◇ 대출취급기관장: 용자실적(별지 제14호 서식)을 선정이 완료된 후 매 익월 20일까지 Agrix에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 성과지표 측정: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선정자수/목표치)으로 평가하며, 성과지표는 우수농업경영인의 숫자를 말함.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
- ◇ 만족도 조사: 우수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애로 사항,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병행. 조사는 12월 중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12년도 사업평가: 하반기 중 우수농업경영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태,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 ◇ 환류: 평가결과는 우수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제도개선에 반영



2013년도 사업신청 관련사항

### 사업신청 관련 사항

- 신청서 제출: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 신청자격: 2007년 12월 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신청기한: 별도통보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Ⅲ.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표

세대구분:  단독세대  공동세대(부모)

의료보험증을 통해 확인하여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의 경영규모와 소득을 합산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회계 및 경영기장	경영기장 주기	1. 경영기장을 일정한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가?	7일 미만	15일 미만	월 미만	기타 주기	-	미작성
	평가방법: 농업경영 관련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계의 전산화 정도	2. 농업경영시 회계를 프로그램 또는 엑셀 등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하는가?	사용	-	-	-	-	미사용
평가방법: PC, S/W, 회계프로그램, 엑셀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5점, 공책 등 장부에 관리하고 있으나 전산화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증빙자료: 프로그램명(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홍보매체 통한 홍보건수	홍보매체 통한 홍보건수	3. 최근 3년 이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 홍보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10회 이상	7~9회	4~6회	1~3회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홍보실적 자료를 보고 점수 부여 (언론매체 내역 기록: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홍보의 질	4. 최근 3년 이내 활용되었던 주요 홍보매체는 무엇인가?	중앙 일간 및 방송	지역 일간 및 방송	주간/ 월간지 (중앙, 지방지 모두 포함)	홍보 행사 참여, 온라인 매체 홍보	전단지 및 DM 등 개인적 홍보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홍보실적 자료를 보고 점수 부여 (홍보매체명: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고객관리	고객관리 여부	5.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기타	비관리/ 미제출
		평가방법: 고객관리장부 유무 및 세부내역 ( 고객규모 : 약 ) 명 ) 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홍보지 전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브랜드	6. 등록된 브랜드를 보유하고거나 참여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평가방법: 대상 농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농가개별 또는 공동브랜드를 확인하여 평가 (□개인 □공동 브랜드명: ) 등록브랜드만 인정되며, 미등록브랜드와 광역브랜드는 인정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E- 비즈니스	전체 매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	7. 전체 매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 경영장부, 택배발송대장 등을 통한 매출 확인	10% 이상	7~9% 이상	5~6%	3~4%	1~2%	없음/ 전자 상거래 하지 않음
		평가방법: 홈페이지,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외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가가 속한 농업조직에서 e-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도 점수 부여 전자상거래 이용유형: ) 전자상거래 매출액: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증	인증 여부	8. 자체생산품 중 친환경, GAP, HACCP 등 정부기관 또는 국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품목이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의 유효기간 확인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영 계획서	경영 계획서 보관 여부	9. 최근 3년간 농가에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3년 보유	2년 보유	1년 보유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여부와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평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경영성과	농업인의 농업소득	10. 해당 농가의 농업소득은 어느 수준인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명 (재배방식)</th> <th>생산규모 (토지)</th> <th>생산량</th> <th>연간 매출액</th> </tr> </thead> <tbody> <tr><td>1</td><td>( )</td><td></td><td></td></tr> <tr><td>2</td><td>( )</td><td></td><td></td></tr> <tr><td>3</td><td>( )</td><td></td><td></td></tr> <tr><td>4</td><td>( )</td><td></td><td></td></tr> <tr><td>5</td><td>( )</td><td></td><td></td></tr> <tr><td>합 계</td><td></td><td></td><td></td></tr> </tbody> </table>	품목명 (재배방식)	생산규모 (토지)	생산량	연간 매출액	1	( )			2	( )			3	( )			4	( )			5	( )			합 계				품목 소득 평균	99 ~ 80%	79 ~ 60%	59 ~ 40%	39 ~ 20% 미만	없음/ 미제출
		품목명 (재배방식)	생산규모 (토지)	생산량	연간 매출액																															
		1	( )																																	
		2	( )																																	
3	( )																																			
4	( )																																			
5	( )																																			
합 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경영장부 등 농업소득 증빙가능 자료를 통해 해당 농가의 주 생산품목, 토지 대비 생산시설규모, 생산규모, 연간 매출액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품목별 평균소득>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단,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 1) 오이의 경우 괄호안에 반드시 '축성', '반축성', '억제' 등으로 재배방식 표시 2) '체형'의 경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 보유여부	11. 농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실안, 상표권 등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특허, 실용실안, 상표, 품종보호, 디자인, PM 등 독점적 권리 증빙자료 확인 (등록증이나 허가증 등의 유효기간 유의) 지적재산권 보유내역:                                  취득일:																																				
생산기술	전문성	12. 생산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생산일지 작성보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생산기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생산기술 관련 자격증 보유 확인자격증 보유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생산기술 관련 강의 실적이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평가방법: 강의시간표, 자료집 등 강의실적 증빙자료 확인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자격증	자격증 보유여부	15.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 생산기술 관련 자격증을 제외한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생산기술과 관련 없는 자격증(예: 정보처리기사 등)을 확인하여 평가 자격증 보유내역:								
정규학력	정규학력	16. 최종 학력수준은 어떠한가?	농대졸 (생산계)	농고졸 (생산계)	대졸 (비생산계)	농대졸 (비생산계)	고졸 이하 (비생산계 농고포함)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최종학력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단, 대학교 재학 등 특이사항은 직접 기재 ( )								
수상실적	수상 여부	17.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상경력에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상 중요도	수상 중요도	18. 어느 기관으로부터 수상했는가?	중앙 정부	-	광역 자치 단체/ 기타	-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수상내용을 확인 후 어느 기관으로부터 수상을 받았는지 확인 수상기관 및 종류:                                  수상일:                                  년                                  월                                  일								
컨설팅 & 코칭	컨설팅 & 코칭 경험유무	19.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있음	-	-	-	-	없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 (보고서, 계약서 등 최근 3년 이내만 해당) 컨설팅기관:                                  컨설팅이나 코칭받은 주요내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교육이수 실적	교육이수 여부 및 교육이수 시간수준	20. 최근 5년 내 이수한 전체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수료증 등을 통해 이수시간 계산 및 확인	200시간 이상	160~199시간	120~159시간	80~119시간	79시간 미만	없음/미제출
		21. 농산업분야에서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농장명:                    농장주: 주소: 연락처: * 수료증, 급여내역 등을 통해 확인	10개월 이상	7~9개월	5~6개월	3~4개월	2개월 이하	없음/미제출
평가방법: 교육이수 시간 산정대상은 최근 5년의 해당교육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교육 기준이며, 아래 해당농가는 무조건 5점 부여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농과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특성화농고프로그램 참여자/해외농업인턴 이수자)								
사업성	사업성	22. 사업계획서의 세부계획 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없음/미제출
		평가방법: 사업계획 관련 SWOT 등 체계적 분석 여부, 사업계획서의 논리성과 체계성, 작목선택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중장기 계획	중장기계획	23. 중장기 계획이 연도별로 계량화된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없음/미제출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중 기술개발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24.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승계확인서가 있는가?	있음	-	-	-	-	없음/미제출
평가방법: 승계확인서 유무 평가								
자금조달 능력	부채 비율	25. 1년간 갚아야 할 총 부채(유동부채)는 어느 정도인가?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평가방법: 부채증명신청서와 대출신청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1년 갚아야 할 총부채(유동부채)/연간농가소득(농외소득포함)>의 비율이며, 소득증빙자료 확인. 연간부채 :                    연간소득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신용 능력	신용 능력	26.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양호	-	보통	-	-	불량
		평가방법: 농협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 평가						
자산현황	소유 농지 규모	27. 농업경영인 본인의 소유농지는 어느 정도인가? *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14,500㎡ 이상	13,050 ~ 14,499㎡ 이하	11,600 ~ 13,049㎡ 이하	8,700 ~ 11,599㎡ 이하	5,800 ~ 8,699㎡ 이하	-
		평가방법: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농지를 파악하여 기록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기록) 본인 소유농지:                    ㎡                    부모 소유농지:                    ㎡						
경영 규모	경영 규모	28. 품목별 농가평균 경영규모 대비 경영규모는 어떤 수준인가? * 품목(쌀, 보리, 감자, 오이, 호박 등)별 경영규모 자료가 있어야 함	농가 평균 경영 규모	~10%	~20%	~30%	~40%	-
		평가방법: 품목별 평균 및 소득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사실여부 확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을 통해 경영규모를 파악하여 기록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분 포함)						
조직 활동	공동체 가입 및 활동여부	29. 최근 1년 이상 공인단체나 비영리 단체 등 지역사회공동체 조직에 가입 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 지역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H, 농민단체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 주로 농업공동체 조직을 말함	1년 이상 활동	-	1년 미만 활동	-	-	없음/미제출
		평가방법: 가입기간이 포함된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 회원증명서 명단(농민단체, 청년회, 4-H, JC 등) 또는 기간이 포함된 회원증명서를 통해 공동체 조직 활동경험을 파악하여 기록(사업시행일 2011년 1월 1일 기준, 개수제한 없음) 단체명/조직명:                    가입일:						
		30. 생산자 조직에 공동구매나 출하 등을 통해 참여하거나 이용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	-	-	-	없음/미제출
평가방법: 회원명부, 생산자조직 이용 여부 실적 증명을 통해 생산자 조직에의 가입 및 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기록 조직명:                    가입일:                    실적내용(판매액 등):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없음
목표 의식	1. 당신은 원하는 일은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려고 노력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이 맡은 일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도전에 부딪힐 때 실패보다는 성공의 결과를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시간이나 돈이 충분치 않더라도 흥미있는 일은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농업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시·군 담당자 평가							
가치관	7.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분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문제 해결에 끈기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실패한 경우 실망하지 않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배우려고 노력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시·군 담당자 평가							
정책 부합성	12. 비용절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 및 경영 등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조직화, 규모화의 의미에 대해 아십니까? (가족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현재 농정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시·군 담당자 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없음
의사결정 /판단력	15.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당신은 중요한 경영문제에 대해 주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까? (가족, 외부전문가, 혼자 결정, 선배, 친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사업을 할 경우 당신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새로운 제품, 종업원, 생산방법, 자금계획, 모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경쟁상황에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관심을 두는 편입니까? (어떻게 게임할 것인가?, 이익 또는 손해를 볼 것인가?, 위의 두 가지 모두, 두 가지 모두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십니까? (다양한 정보 및 자료 분석, 지인들과 상의, 언론매체 등 대중 매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시·군 담당자 평가						



# 대한민국 농식품 CEO를 위한 솔루션

## okdab [옥답] CEO입니다.

www.okdabceo.com



대한민국 농식품 CEO를 위한 솔루션

### okdab CEO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 대한민국 농식품의 미래, 당신은 읽고 있습니까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업 환경 변화,

다양화·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 요구까지

급변하는 농식품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 신개념 마인드, 신지식 정보로 무장하십시오!

#### 이제까지 없던 무한 정보가 okdab CEO(옥답 CEO)를 통해 열립니다

okdab CEO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농식품 경영 리더를 위한 신개념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입니다.

현장 사례 중심의 생생한 콘텐츠는 물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차별화된 지식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한 차원 높은 농식품 지식정보

okdab CEO에서 얻어 가십시오.

#### 대한민국 농식품 리더를 꿈꾸는 모두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는 옥답입니다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옥답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수확하는 옥답입니다.

소비자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옥답입니다.

생생한 현장 중심 학습을 체험하는 옥답입니다.

※ 옥답 :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름진 논'이라는 뜻, 농식품 경영 리더들이 원하는 풍성한 정보가 가득하다는 의미  
ok와 dab[답]을 합성한 해결책, 솔루션의 의미

##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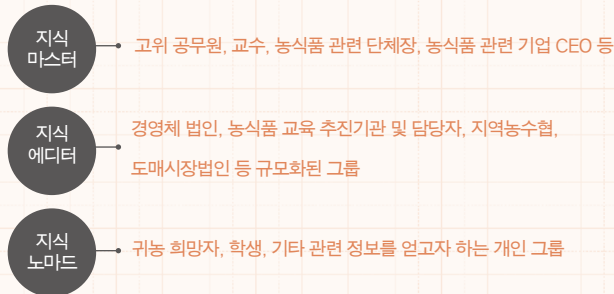
### 아이디어도 OK, 비즈니스도 OK! okdab CEO에서는 모두가 OK입니다

#### 농식품에 관한 모든 것이 OK! okdab CEO

농식품과 관련한 궁금점과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의 창입니다.  
경영자로서 고민했던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했던 정보, 세미나는 물론 농식품 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 대한민국 농식품인이라면 누구에게나 OK! okdab CEO

지식마스터, 지식에디터, 지식노마드 등 3그룹 모두에게 맞춤형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차별화된 독점 정보도 OK! okdab CEO

현장에 있는 지식 전문가들의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해외 선진국 및 공영 TV와의 제휴로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관련 기관 등과의 MOU 추진으로 고급 정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 언제 어디에서나 OK! okdab CEO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업계 명사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IPTV 및 CUG(Closed Users Group) 등 다양하고 특별한 서비스로 만납니다.

## SITE MAP

### 식품味

세계식문화기행  
위대한 셰프와 창조  
주유천하  
희망! 한국농식품  
즐거움 와인타임  
푸드텔링  
식품안전경영  
일본, 전통이 첨단  
차문화의 향기  
팜투 테이블

### 리더심通

농식품CEO열전  
신손자방법  
인적자원관리  
기업문화레벨업  
협상의기술  
세레게티 생존경영  
세종리더십  
위대한 리더의 조건  
스포테인먼트경영  
과짜의 시대  
브라보! CEO Life  
골프와 경영  
대가의 숨결  
파워스피치  
한국형리더십  
성공 키워드 구.윤.몽  
김정문의 에디톨로지  
하이 크레이지  
新소통방법

### 마케팅感

농식품 히트법칙  
마케팅 전략  
디자인경영  
스페이스마케팅  
생각뒤집기  
과학콘서트  
상상극장

### 비즈니스窓

그린이 미래다  
행정혁신이야기  
삼매경  
윤선생의 전략교실  
경영전략  
비즈니스3.0  
경영노트  
재미는 창조다  
비즈니스모델  
상인열전  
르네상스창조경영  
WinWin 노무관리  
경영의구루  
실패경영  
Work SMART  
경영,바둑을 만나다  
전쟁에서 배우는 경영학  
그린환경만들기 프로젝트

### 웰빙樂

신성장프로젝트,관광  
특종지방파일  
북리뷰  
대중문화읽기  
미술가산책  
뮤직인사이트  
오페라하우스  
건강토크  
닥터 YOU의 선택  
심리클리닉  
유머로 유혹하라  
사진읽는 CEO  
부부사용설명서  
트래블인사이트  
두근두근 월드컵  
신전원일기  
바닷가로 두바퀴로  
명문가 위대한유산  
다시읽는 고전문학  
내인생 결정적순간  
대중음악산책

### 트렌드新

특종 현장 속으로  
농식품 포커스  
이슈리포트  
으랏차차코리아  
경제전망대  
금융포커스  
산업전망대  
차이니특집  
일본재발견  
트렌드21  
월드리포트  
니하오! 상하이엑스포  
정책포커스  
6차산업 핫이슈  
전망2011  
중국, 농업은 지금  
경제포커스  
미국경제칼럼  
한국경제칼럼  
중국경제칼럼  
농업전망2011  
농업관측정보

### 명강사 초대석

민박사의 녹색우체부  
RDA 인테러뱅크  
특강 삼국지  
벤처농업대학 특강

# 후계농업 인력육성 백문백답

발행일 2012년 1월

발행처 농림수산식품부

발행인 농어촌정책국장

편집인 경영인력과장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전 화 02-500-1731

디자인 (주) 퓨어커뮤니케이션즈 02-856-4372





“배울수록 성공이 보이는 농업인의 희망교육 대한민국 대표 사이트”

# 농업교육포털서비스 AgriEDU.net

농업교육포털서비스 AgriEDU에서는 농업인의 미래를 열어 갈 다양한 성공비법을 공개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배우는 농업인의 희망교육!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온라인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원스톱  
100여개의 다양한 교육과정~  
농업인을 위한 경영 및 전문정보부터  
예비농업인을 위한 품목기초정보까지!

## 교육이력

농식품부지원 농업교육의 이력 확인  
모든 교육이력 조회 및 누리이력 신청~

## 동호회

농업인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 오프라인교육

농업교육을 만눈에 확인한다

잔뜩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을  
포외에서 신청까지 편하게~

### 에그리에듀가 좋은 5가지 이유

(www.agriedu.net)

1. 온라인 교육 무료! 시간도 내 맘대로!  
오전 온라인 교육과정의 무료~  
오후 야근이나 휴가는 시간제 일하는 과정을 골라서 본다
2. 발품 팔지 않아도 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전국! 농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 정보와 신청을 한눈에~
3. 도와줘! 든든한 학습 도우미  
전혀 한 통짜로 모든 궁금증 해결!
4. 나눌수록 힘이 되는 정보~ 공유하기  
"정보채"에서 농업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함께 나눈다
5. 개인정보보호 강화! 걱정 NO~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위한  
실명확인 및 공과이력 도입!

### 강력추천 온라인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농업경영교육	농산업 계획서 특강(2시간)
농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컨설팅 비효율기(3시간)
농업기술교육	농작업부 일과견제(3시간)
육종교육	원호보의 농산물 무역정책기(8시간)
식물교육	신환경 농산물 인증제(10시간)
정보교육	영공예강, 농산물전자상거래(5시간)
정보교육	21C테크, 농촌관광(10시간)
귀농교육	귀농·귀촌 첫걸음(4시간)
농사교육	농사·우역마련은 이렇게!(7시간)